

인천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4가단237597 손해배상(기)
원 고 남○○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
담당변호사 최규호
피 고 서○○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
담당변호사 최유덕
변 론 종 결 2015. 5. 14.
판 결 선 고 2015. 6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9. 22.부터 2015. 6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9. 2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피고는 2013. 8. 11.부터 2014. 7. 27.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165회에 걸쳐 별지 표 '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글'란 기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.

2)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,000,000원을 선고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1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의 모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,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한데, 위 모욕의 내용, 행위 태양,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욕한 점,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,000,000원으로 정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9. 22.부터 2015. 6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성수